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류형 지역화폐의 인수·관리 및 환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맹점 등록 신청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화폐의 종류 규정 삭제(안 제2조)

○ 담당공무원 변경 시 업무 인계·인수(안 제8조)

○ 지류형 지역화폐의 관리(안 제9조)

○ 지류형 지역화폐의 환전(안 제10조)

○ 가맹점 등록 신청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 지류형 지역화폐 관련 서식 신설(안 별지 제6호서식 ~ 제10호서식)

□ **개정규칙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2026. 11. 27. ~ 12. 17.(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12월 중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규칙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규칙 제 호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을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류형 지역화폐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지류형 지역화폐의 관리) ①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제조된 지류형 지역화폐를 인수하는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류형 지역화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현황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폐기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지류형 지역화폐의 환전) ① 가맹점은 지류형 지역화폐를 환전하

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류형 지역화폐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별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가맹점이 매출액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 평균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환전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민생경제과 ☏ 940-4522
입 안 자	민생경제과장	윤 은 주
	민생경제팀장	조 선 예
	담 당 자	방 성 국

[별지 제1호서식]

지역화폐 (카드형 □ / 지류형 □)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호			업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류형) 환전계좌	※ 지류형 등록 시에만 작성(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카드형) 지역화폐의 결제금액은 운영대행사의 매입대행사에 등록된 가맹점 정산 계좌로 정산되어 입금됨을 확인합니다. *협약기간 만료 등으로 운영대행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운영대행사의 매입대행사로 변경될 수 있음. **확인** □					
	(지류형) 지류형 지역화폐의 결제금액은 판매대행점에서 위 환전계좌로 환전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권면금액 중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지류형 지역화폐의 환전 및 환전요청 금지 - 위조·변조 또는 식별이 불가능하게 훼손된 지류형 지역화폐의 취급 금지 **확인**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지류형 등록 시) 환전계좌 통장 사본 1부

파주시장 귀하

파주시 지역화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파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사용합니다.

1.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가맹점계약 체결 · 유지 · 이행 · 관리 · 개선, 법령상 의무이행, 전화상담, 민원처리, 본인여부확인, 지류형 지역화폐 환전

나. 수집 · 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가맹점정보 : 가맹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환전계좌(지류형 가맹점에 한함)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음성데이터
- 기타 계약의 체결 · 유지 · 이행 · 관리 · 개선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다.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가맹점 계약 해지, 채권 · 채무 분쟁 종료)일부터 5년까지(관계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본인은 파주시가 상기 수집 ·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동의사항은 가맹점 등록에 필수적이거나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고객 편의제공, 서비스 안내 및 판매, 사은 판촉행사 등 마케팅 활동, 시장조사 바탕 컨설팅 자료생성, 서비스 안내 등 파주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대행 업무처리, 지류형 지역화폐 환전 업무처리

나. 수집 · 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 · 이용에 관한 정보와 동일

다. 정보 제공기관 및 보유 및 이용기간 : 파주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판매대행점, 정보 제공일부터 운영대행 협약 또는 판매대행 협약 종료 시 까지

본인은 파주시가 상기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품, 할인쿠폰 제공 등), 상품 서비스 소개, 사은행사(할인, 적립, 무이자 등) 안내 등 이용 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자1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자2 성명	(날인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지류형 지역화폐 업무 인계 · 인수서

1. 지류형 지역화폐 현황(단위: 매, 원)

권종	발행		지급(판매)		보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 지류형 지역화폐 운영자금 현황(단위: 원)

환전액	미환전액	이자발생액	계좌잔액	비고

※ 첨부: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 계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인 수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류형 지역화폐 인계 · 인수서

1. 인계 · 인수 현황

권면금액	매수	금액(원)	일련번호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 권종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권면금액에 따름

2. 인계 · 인수 사항

파주시, 0000(제조업체), 0000(판매대행점)은 위 현황과 같이 지류형 지역화폐를 년 월 일 0000(장소)에서 상호 인계 · 인수함.

< 인계 · 인수자 >

파 주 시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제 조 업 체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판 매 대 행 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지류형 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 현황

(년 월분)

권종	인수		판매		환전		재고	
	일련번호	매수	일련번호	매수	일련번호	매수	일련번호	매수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류형 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직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지류형 지역화폐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 ~ . . .

권면금액	매수	폐기방법	비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관 기간이 지난 지류형 지역화폐를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담당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지류형 지역화폐 환전 청구서

권종	수량(매)	금액(원)	비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류형 지역화폐 환전을 청구합니다.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입 금 처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귀하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지류형 지역화폐 환전 청구서 접수증

권종	수량(매)	금액(원)	비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 당 자: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전자지역화폐로 한다.	제2조(지역화폐의 유효기간)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생략)	제8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류형 지역화폐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지류형 지역화폐의 관리) ①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제조된 지류형 지역화폐를 인수하는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류형 지역화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현황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폐기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0조(지류형 지역화폐의 환전) ① 가맹점은 지류형 지역화폐를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류형 지역화폐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별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가맹점이 매출액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 평균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환전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관계법령발췌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0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 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13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규칙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전자지역화폐로 한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장려금·맞춤형복지혜택 등 파주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수당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지역화폐 구매한도)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단체,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 가능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시장과 가맹점 신청자는 별

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제한) 삭제 <2026. 3. 26>

제6조(가맹점 변경 및 해지) 가맹점의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 신청 제한 등) 삭제 <2026. 3. 26>

제8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지역화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2019. 5. 31.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5. 규칙 제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31.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5. 7. 규칙 제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5. 7.>

【 앞면 】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태 및 종목	
	대 표 자		생년월일 및 성별	(남, 여)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폰 :)	
	사 업 장 소 재 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뒷면 】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본 신청서는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셔야만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 · 이용 목적 및 내용

수집 및 이용목적	▪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 파주시 지역화폐 취급 및 환전
보유 및 이용기간	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주소, 사업자번호, 휴대전화번호) ▪ 금융거래정보(은행명 및 계좌번호) ▪ 기타 지역화폐 취급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주시 지역화폐 취급에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파주시 지역화폐 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파주시 지역화폐 취급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상기 본인은 파주시 지역화폐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파주시가 발행하는 파주시 지역화폐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파주시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파주시와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변경·해지) ① 파주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파주시장은 가맹점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파주시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파주시 지역화폐 소지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파주시장과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역화폐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파주시장과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파주시	**가맹점**
주 소: 파주시 시청로 50	상 호:
대표자: 파주시장 (인)	주 소:
	대표자: (인)

[별지 제3호서식]

파주 - 호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증

○ 상 호 :

○ 성 명 :

○ 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5 .7.>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파주 - 호)

<table>
<tr><td rowspan="4">신청인</td><td>대 표 자</td><td></td><td>생년월일 및 성 별</td><td></td></tr>
<tr><td>상 호</td><td></td><td>사 업 자 등 록 번 호</td><td></td></tr>
<tr><td>사 업 장 소 재 지</td><td></td><td colspan="2">전화번호 :
(휴대폰 :)</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신청사항</td><td colspan="2">변 경 전</td><td colspan="2">변 경 후</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변경사유</td><td colspan="4"></td></tr>
</table>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가맹점 지정서 원본 2. 가맹점 등록 계약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별지 제5호서식]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파주 - 호)

신청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상 호		전화번호 : (휴대폰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해지 사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72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윤수진
주관부서	민생경제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방성국
평가결과 통지일	2026. 11. 2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table>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6A경기파주070</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경기도 파주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민생경제과</td></tr>
<tr><td>담당자명</td><td>방성국</td><td>전화번호</td><td>031-940-4522</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6년 11월 20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민생경제과)</td><td colspan="4">- 규칙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td></tr>
<tr><td>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지 제1호서식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④ 성별 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table>
<tr><th>구분</th><th>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th><th>개선안
(법령 수정안)</th><th>검토사유</th></tr>
<tr><td>1</td><td><별지 제1호서식>
대표자 정보</td><td><별지 제1호서식>
대표자 정보 : 성별 수집</td><td>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선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td></tr>
</table></td></tr>
</table>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2026년 11월 30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11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민생경제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70			
정 책 명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민생경제과		
	담당자명	방성국	전화번호	031-940-452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별지 제1호 서식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표자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칸 마련하겠음.

2026년 11월 23일

민생경제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민생경제과
	담 당	팀장 조선예 담당자 방성국
3. 관련법령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4. 주요골자	○ 지역화폐의 종류 규정 삭제(안 제2조) ○ 담당공무원 변경 시 업무 인계·인수(안 제8조) ○ 지류형 지역화폐의 관리(안 제9조) ○ 지류형 지역화폐의 환전(안 제10조) ○ 가맹점 등록 신청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 지류형 지역화폐 관련 서식 신설(안 별지 제6호 ~ 제10호서식)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지류형 지역화폐의 인수·관리 및 환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맹점 등록 신청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